

SI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SI교육센터(이하 ‘본 센터’)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센터의 기능) 본 센터는 사회혁신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서울여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)의 SI 교육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.

제2장 사 업

제3조(사업내용) 본 센터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SI 교육 특성화 체제 구축
2. SI 관련 교과목 개발 지원
3. SI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SI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
5. 사업 성과의 홍보
6. 그 밖의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장 구 성

제4조(구성) 본 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

1. 센터장
2. 전담교수 1명
3. 연구원 약간명

제5조(센터장)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전담교수) 전담교수는 본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교육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, SI 교육과 관련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원) 연구원은 교육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장 위 원 회

제8조(SI교육위원회) ① SI 교육 특성화를 위한 본교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SI교육위원회

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SI교육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으로는 기획처장, 교육혁신단장, 교육혁신팀장을 당 연직으로 하며, 단과대학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수행의 방향 점검
2. 주요 추진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컨설팅
3.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조치계획 수립
4.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문 수행
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5장 재 정

제9조(재원 및 회계) ① 본 센터의 재정은 본교의 지원, 국내외 각 기관의 지원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재무·회계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(제정 <2019 제14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8조 제2항 개정 <2020 제3차 교무위원회>)